##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20

발의연월일: 2024. 8. 12.

발 의 자:서영교·이해식·황정아

김준형 • 조인철 • 한민수

정태호 · 이연희 · 송재봉

오세희 • 이춘석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, 회원과 고객 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, 대통령령으로 보장 한 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보장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회원 등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, 회원 등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회원과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보장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(안 제72조의3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금고의 회원 (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)을 보호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회장은 주무부장관의 승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고의 예탁금, 적금, 그 밖의 수익금 또는 중앙회의 공제금과 자기앞수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2조의3(준비금의 용도 등) ①	제72조의3(준비금의 용도 등) ①
• 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
	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금고의
	회원(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
	포함한다)을 보호하여야 할 긴
	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회장
	은 주무부장관의 승인 및 국무
	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
	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고
	의 예탁금, 적금, 그 밖의 수익
	금 또는 중앙회의 공제금과 자
	기앞수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
	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
	변제할 수 있다.